關稅의 財政的 位置와 農水産關稅制度의 問題*

金 基 成
責任硏究員, 國際農業室

Ⅰ. 關稅의 租稅體系 및 行政·法律上의 위치와 制度上의 특징
Ⅱ. 關稅의 財政寄與와 農水産關稅의 비중
Ⅲ. 農水産物輸入에 대한 關稅와 非關稅障壁
Ⅳ. 農水産物 關稅制度의 問題와 改善方向

Ⅰ. 關稅의 租稅體系 및 行政·法律上의 위치와 制度上의 특징

1. 關稅의 현행 租稅體系上의 위치와 특징

현행 관련 法律 등에 따르면, 우리 나라 租稅體系上에서 관세는, 우선 國稅의 일부로서 內國稅와 구분되어 직접세인 所得稅, 法人稅 등과 다를 뿐 아니라, 간접세이면서도 課稅客體가 국경을 통과할 때에 賦課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附加價値稅나 그밖의 특별소비세 등과도 다르다. 또 目的稅이면서 時限稅인 防衛稅나 교육세 등과도 현저히 다른 위치에 있으며, 국세가 아닌 地方稅와는 더욱 다른 위치에 있다〈그림 1〉.

한편, 이 關稅를 몇 가지 基準[1]에 의한 구분이 가능한 租稅로서의 性格面에서 보면, 間接·獨立·普通·永久稅의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關稅에 부여된 그러한 旣存의 위치에 관하여 다소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즉, 關稅가 國境이라는 특수한 無形의 장벽을 통과하는 物品과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租稅인 동시에 中央政府 차원의 所管租稅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어 그 위치를 다른 視角에서도 볼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 法規 등에 의하면 우리 나라 租稅體系는 일차적으로 國稅와 地方稅로 大別된 연후에, 관세는 내국세와 더불어 前者 즉, 國稅에 속하는 것으로 分類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國稅에 포함되나 재산세·취득세·농지세 등의 地方稅는 國稅에 속하지 않는다는 論理이다.

이 경우, 국세의 개념은 國家(中央政府+地方

* 本稿의 Ⅲ과 Ⅳ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硏究報告 第114號(1985.12)로 발표한 「農水産物關稅制度의 效率的 運用方案에 관한 硏究」(金基成·金亨模共同硏究)의 一部內容을 要約·補完한 것임.

[1] 納稅者와 擔稅者가 同一한가의 여부에 따라 直接稅와 間接稅가 區分되는 것 등과 같은.

政府)의 세금이라는 일반적인 폭넓은 의미의 것이 아니라, 단지 中央政府만이 課稅權者가 되는 세금(狹義의 國稅)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暗示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租稅體系를 論함에 있어서 租稅의 槪念을 "國家(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개념의)의 稅金"이라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곧 "國稅"로서의 代稱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合理的이다.

이와 같이 국세의 개념을 현재 地方政府가 課稅權者로 되어 있는 地方稅까지를 포함하는 廣義의 것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國稅基本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分類되고 있는 前述한 바와 같은 現行 租稅體系는, 예컨대 "地方稅는 內國稅가 아니라"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일종의 제도상의 誤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關稅와 區分함이 당연한 內國稅가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課稅要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租稅일진대 현행 地方稅는 그에 속하는 모든 單一稅種이 그 성질상 모두 內國稅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제도상 國稅와 地方稅의 구분이 단순히 課稅主體를 기준으로 하여 中央政府가 부과하는 租稅를 국세, 地方政府가 부과하는 租稅를 地方稅로 하였을 뿐이라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一國의 租稅體系 전체를 놓고 볼 때, 租稅는 국경을 기준으로 內國稅와 關稅를 區分해 놓고, 內國稅를 다시 中央稅(가칭)와 地方稅(현행)로 區分하는 것이 보다 自然스러운 분류가 될 것이며, 이때에도 關稅의 課稅主體는 中央政府가 된다 하여 큰 問題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國際貿易은 국가 경제의 盛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輸入의 開放問題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당면한 主要課題로 부상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關稅가 지니는 國家租稅로서의 比重과 意味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租稅의 分類에 있어서도 그것을 "中央政府가 부과하느냐, 地方政府가 부과하느냐"의 문제(國稅냐 地方稅냐의 問題)보다는 課稅客體가 통과하는 국경을 기준으

그림 1 韓國의 租稅體系(現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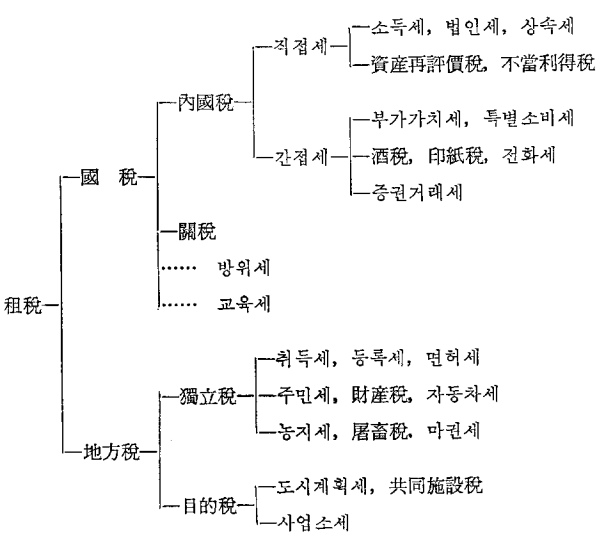

그림 2 **租稅體系上 關稅의 바람직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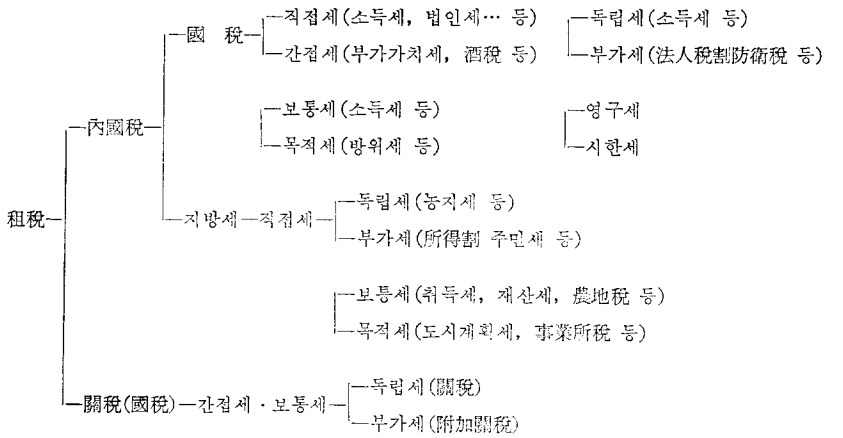

* 筆者見解임

로 하여 "對內的인가, 對外的인가"의 문제(內國稅냐 外國稅(關稅)냐의 問題)가 보다 關心事일 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우선 현행 租稅體系를 國境을 기준으로 하여 內國稅와 關稅로 大別해 놓고, 다음에 內國稅를 가칭 中央稅(협의의 國稅)와 地方稅 등으로 分類하며, 그 下位分類는 현행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새로운 租稅體系가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그림 2〉.

관련 法規面에서 보더라도 關稅에 관한 基本法은 關稅法이고, 국세에 관한 基本法인 國稅基本法이나 국세징수법 등은 예컨대, 심사청구나 체납처분 등의 경우처럼 특별히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關稅와의 關係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의 조세체계를 그와 같이 內國稅와 關稅로 먼저 大分하는 體系로 조정하려면 물론 현행의 關稅를 狹義의 國稅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는 關係法律을 改正, 補完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2. 현행 關稅의 行政 및 法律體系

한국의 현행 關稅行政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商品의 通關, 밀수입 단속 등으로서 政府組織法 第32條 第1項[2] 및 財務部와 關稅廳의 職制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관세의 行政體系는 중앙정부의 재무부장관 지휘감독하에 재무부와 關稅廳 및 一線稅關行政組織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

그러나 關稅는 物品과 서비스 등의 輸出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關聯된 行政業務는 위의 「재무부—관세청—세관—…」의 系統的 體系 이외에도 輸入政策과 관련이 있는 모든 行政部處機關[3] 과의 복잡한 연관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

[2] "재무부장관은 화폐 금융 국채 정부회계 내국세제와 관세 외국환 및 대외경제 협력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총괄과, 조정총괄과, 통상담당관실, 개편전의 해협위 기획단 통상담당관, 상공부 무역정책과, 수입과, 통상정책과, 국제협력과, 재무부 국제관세과, 관세협력과, 산업관세과, 관세정책과, 관세청총괄징수과, 감정과 환급과, 관세조사과, 평가과, 농수산부 국제협력과, 수산청무역과, 외무부 통상정책과 등.

그림 3 **關稅行政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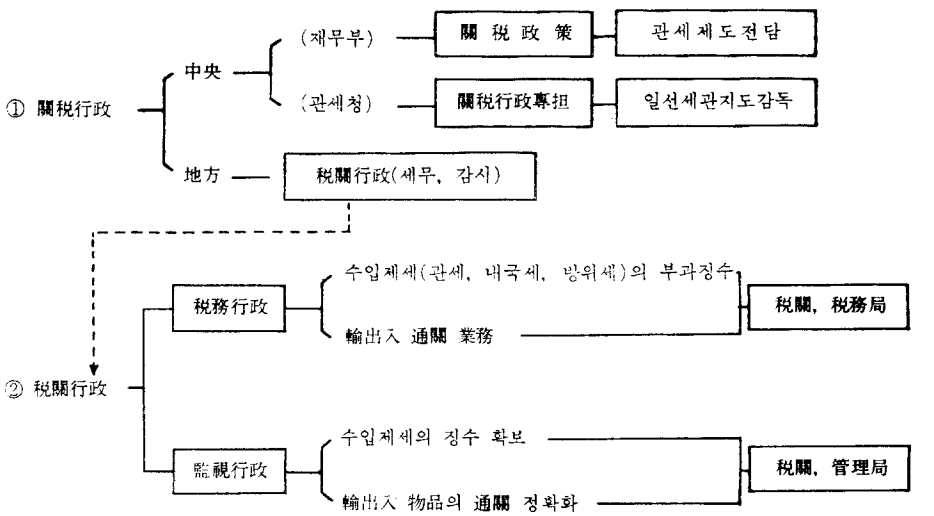

그림 4 **關稅 法律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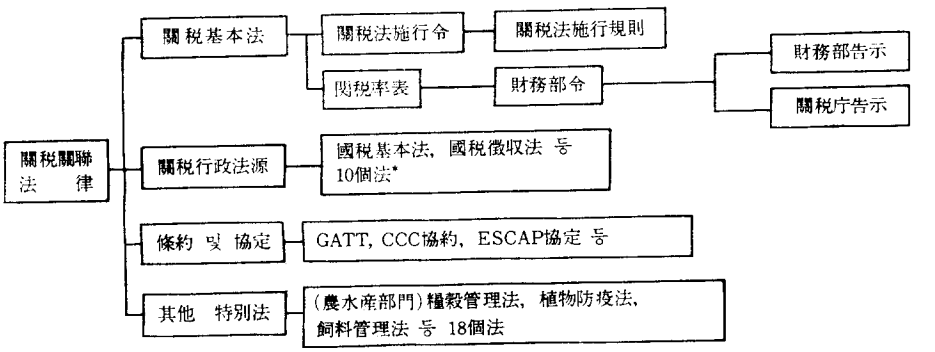

* 國稅徵收法, 國稅基本法, 民法, 刑法, 刑訴法, 關稅還給特惠法, 外資導入法, 租減法, 臨時輸入附加稅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이러한 행정부처간 連結體系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행정업무는 그러한 制度上의 연결만큼 유기적인 운용이 안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세행정기관간의 연결의 복잡다기성은 어느 면에서는 관련기관간의 책임한계를 흐리게 하고 적극적인 업무효과를 감소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현행 관세제도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체계는 關稅基本法을 비롯하여 關稅行政法源, 조약 및 협정, 기타 特別法 등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關稅行政法源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형법, 刑事訴訟法, 관세환급특혜법, 외자도입법, 租減法, 임시수입부가세법,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등이 있다〈그림 4〉. 또 관세와 관련된 특별법에는 농수산부문에 한해서만도 18개 법률이 있다.[4]

[4]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검역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잠업법, 식물방역법,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법, 양곡관리법, 담배전매법, 홍삼전매법, 인삼사업법, 대마관리법, 마약법, 식물위생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등.

3. 關稅의 稅制上의 특징

현행 조세체계상 關稅가 國稅로서 內國稅나 地方稅 등과 區別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關稅가 그것을 除外한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를 한데 묶어 內國稅로 하고 그것과 對稱되는 개념으로서의 關稅의 位置에 놓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의 차가 없지 않다.

다만 關稅는 擔稅者와 納稅者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間接稅의 性格이 있으며, 비록 稅額의 사용목적이 明示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이 財政關稅로서의 성격 이외에 특히 保護關稅로서의 입장에 있을 때 간접적인 目的稅로서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원칙상 관세는 獨立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法律이 정하고 있는 附加關稅로서의 입장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 성격의 獨立稅라 할 수 있다.

그밖에 關稅는 그것의 機能을 신축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彈力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他稅에 비하여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Ⅱ. 關稅의 財政寄與와 農水産 關稅의 비중

1. 關稅의 재정상 寄與度

관세가 국가의 財政收入에 기여하는 율은 일반적으로 政治 經濟的 與件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바, 이 사실은 지난날의 歷史的 고찰결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關聯 史料에 따르면 舊韓末 日帝侵略 직전의 약 14년 동안(1896~1909) 당시 國家財政에 대한 關稅의 기여율은 年平均 18.0%였으며, 같은 期間에 租稅收入總額 중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9%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表 1〉.

그로부터 半世紀가 훨씬 경과하고, 大韓民國 정부수립 후 약 20년이 경과한 1967~71년 사이와 1972~76년 사이의 각 5년 동안에는 財政收入에 대한 關稅의 비율은 11.7%와 11.0%, 租稅收入에 대한 關稅의 비율은 16.8%와 14.6% 등으로 현저히 떨어졌다〈表 2〉.

財政이나 租稅收入의 構成內容이 時代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日帝被侵 以前의 그것과의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舊韓末의 14년 동안에는 財政收入에 대한 關稅의 비율이 13.0%~29.3%포인트 범위에서 지극히 불규칙한 변화를 보여 왔으나, 光復 後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후반까지는 9.0%~14.0%포인트 범위에서 불규칙한 변화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1960~70년대가 國際的으로는 開途國에 대한 特惠關稅制度가 인정되기 시작하고,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와 도쿄 라운드(Tokyo Round) 등 관세인하 운동이 전개되고, 多者間貿易協商이 활발해지는 한편, 國內的으로는 수출증대에 의한 國力伸張을 主要國家目標로 삼고 對外去來에 力點을 두던 때였으므로 연쇄적으로 輸入도 늘어나는 등 불규칙한 國內外 經濟與件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財政에 대한 關稅의 비중도 점차 規則的인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즉, 1980년대에 와서는 일반 內國稅의 비중과 防衛稅의 비중이 경미하나마 減少하고 있음에 반하여(內國稅는 1980년의 63.3%에서 1984

表1 舊韓末 關稅의 財政寄與率, 1896~1909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평균
(關稅÷財政收入)(%)	14.4	26.6	22.1	13.9	17.8	14.6	15.9	13.8	13.0	15.3	29.3	24.0	16.5	14.7	18.0
(關稅÷租稅收入)(%)	26.5	39.5	26.5	17.7	20.3	16.0	17.7	14.4	13.2	20.2	34.1	38.7	32.4	30.0	24.9

資料 : 한국관세연구소 「韓國關稅史」, 1985.

表2 70年代 關稅의 財政寄與率, 1967~76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 平均	1972	1973	1974	1975	1976	1972~76 平均	1967~76
關稅÷財政收入	12.3	13.7	11.9	11.4	9.4	11.7	8.3	12.0	12.0	11.1	11.5	14.0	△1.3%
關稅÷國　　稅	19.6	19.5	17.0	15.2	12.8	16.8	13.6	15.8	15.0	14.4	14.3	14.6	△5.0%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8, 1980.

表3 80年代 關稅의 財政寄與率

단위 : 億원, %

	1980		1981		1982		1983		198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財　政　收　入	109,440	—	137,615	—	144,984	—	158,550	—	172,207	—
總　稅　入　(國　稅)	5,807	100.0		8,397	100.0	100.0	10,050	100.0	10,899	100.0
關　　稅	766	13.2	891	12.1	1,031	12.1	1,463	14.6	1,594	14.6
內　國　稅	3,675	63.3	4,595	62.4	5,251	62.5	6,188	61.5	6,697	61.5
防　衛　稅	856	14.7	1,092	14.8	1,175	14	1,306	13	1,477	13.6
기　　타	510	8.8	680	10.7	958	11.4	1,093	10.9	1,131	10.3

* 敎育稅+專賣益金.

資料 : 財務部 「決算槪要」.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각년도.

년에는 61.5%로, 방위세는 같은 해에 14.7%에서 13.6%로 감소) 關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4.6%로 점증하고 있다〈表 3〉.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 關稅의 財政寄與率은 6.5~9.3% 수준이고, 租稅總額에 대한 관세의 비중은 연평균 13.4%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1975年의 防衛稅[5] 창설 이후 계속하여 內國稅(62%), 防衛稅(14%) 등과 더불어 여전히 국가 3大稅收源이 되고 있다.

2. 關稅의 事前的 豫測能力 推移

관세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內國稅, 防衛稅와 같이 재정의 주요 稅入源인데다가 특히 國家의 3大稅收源 중에서 방위세는 永久稅가 아니라 時限稅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歲入豫算의 수립에 있어서 關稅에 관한 事前的 推定의 正確度가 지니는 意味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일(Henri Theil)의 豫測誤差係數에 의하여 분석한 한 先行硏究에 따르면,[6] 지난 20년 동안

[5] 1975년 7월 16일 法律 第2768號로 公布.

[6] 崔洸, 李基煥, 「豫算推定의 正確度에 관한 實證的 分析」, 1985.

表4 內國稅와 關稅收入 推定의 正確度

誤差[1] / 稅目	U	V	U_M	U_S	U_C	MAE (百萬원)	MAPE (%)	P−A (百萬원)	PE範圍(%)
內 國 稅[2]									
1964~83	0.0352	0.0707	0.0036	0.0367	0.9570	132,881	7.13	−12,674	−38.60+17.70
關 稅									
1964~73	0.0991	0.1978	0.0061	0.0079	0.9859	7,093	18.47	−697	−38.33+15.51
1974~83	0.0879	0.1722	0.0903	0.0027	0.9068	98,210	16.14	−39,350	−45.80−20.73
1964~83	0.0879	0.1724	0.0466	0.0131	0.9400	52,652	16.27	−20,024	−45.80+18.08
歲 入 計									
1964~73	0.0430	0.0830	0.8207	0.0359	0.1427	31,620	9.73	−31,620	−26.07 −3.04
1974~83	0.0417	0.0812	0.6803	0.0028	0.3160	424,393	8.74	−413,953	−26.32 +0.55
1964~83	0.0417	0.0812	0.3922	0.1213	0.4846	228,007	8.80	−222,786	−26.32 +0.55

1) U : 예측오차계수 V : 수정예측오차계수 U_M : 평균예측오차비율 U_S : 표준편차 예측오차비율 U_C : 임의예측 오차비율
MAE : 연평균 절대오차액 MAPE : 예산대비 년평균 절대오차비율 PE : 예산대비 오차율
2) 방위세 교육세 포함.
資料 : KDI, 「韓國開發研究」, 1985, p.79.

(1964~83) 한국의 歲入豫算項目[7] 중에서 關稅는 豫算編成팀의 管理能力 범위를 벗어나는 任意豫測 誤差比率이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4~83년 사이에 關稅의 年平均 절대오차액은 526.5億원, 이것의 豫算對比 絕對誤差額比率은 16.3%로서, 같은 期間에 절대오차액이 1,329億원, 절대오차액 비율이 7.1%였던 內國稅에 비하여 그만큼 豫測値와 實績値 사이의 격차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表 4〉.

이 사실은 그동안 國際經濟與件이 국내사정보다 현저히 불확실하여, 그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關稅收入의 豫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示唆한다. 그러나 關稅의 年平均 절대오차비율이 1964~73년 사이에 18.5%에서 1974~83년 사이에는 16.1%로 감소하고 있음은 곧 豫算編成팀의 관세수입 예측능력이 점차 완만한 向上勢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國際間의 貿易開放 擴大 현상과 관련하여 關稅의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不確實性의 要因이 아직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關稅收入의 事前的 豫測技術도 더 開發되어야 할 것임은 否認할 수 없다.

3 농수산물 輸入關稅의 比重

관세수입 중에서 農水産物輸入關稅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에 약 12.9%로서 1981年(19.4%) 이후 비교적 가파른 減少勢에 있다. 일반적으로 關稅收入의 결정요인은 輸入物量과 금액 및 關稅率 등이 되겠으나, 이 경우는 수입농수산물에 부과하는 關稅率보다도 이 期間 농수산부문의 輸入額이 그와 類似한 추세로 변동되어 온 데에 主原因이 있으며, 輸入額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植物性 生産物과 調製食料品 등의 수입 감소현상이다.

이 경우 식물성 생산물은 關稅率表上의 상품분류 제8류의 果實類와 제10류의 穀物 등이 主軸을 이룬다.

농수산물 중 同期間에 관세증가율이 가장 높은 品目은 동식물성 油脂類로서, 輸入額이 1981년에 약 1억 4,190만 달러이던 것이 1984년에는

[7] 一般會計歲入豫算項目 : 內國稅, 관세, 國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및 預收金 등.

表 5 農水産物 輸入關稅의 比重

	1981*	1982	1983	1984	1984/1981(%)
財政收入(A)(億원)	137,615 (109,440)	144,984	158,550	172,207	125.1
國稅(B)(百萬원)	7,257,938 (5,807,700)	8,396,435	10,050,116	10,899,724	150.2
關稅(C)(百萬원)	890,616 (766,063)	1,012,564	1,463,202	1,593,959	183.1
農水產關稅(D)	172,472	159,049	200,857	205,623	119.2
動物性產品	20,556	35,366	37,243	19,485	96.5
植物性產品	82,960	68,306	81,619	108,631	130.9
動植物性油脂	8,670	11,485	16,774	21,277	245.4
調製食料品	60,286	43,892	65,221	56,230	93.3
C/A (%)	6.47	6.98	9.23	9.26	—
C/B (%)	12.27	12.10	14.56	14.62	—
D/A (%)	1.25	1.10	1.27	1.19	—
D/B (%)	2.38	1.89	2.00	1.89	—
D/C (%)	19.4	15.7	13.7	12.9	—

* ( ) 內 數値는 1980年分.
資料 : 財務部, 經濟企劃院 등 관련 局課.

1억 7,897만 달러로 약 26%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에 따른 關稅收入은 1981년의 86억 7천만 원에서 1984년에는 212억 7,200만 원으로 3년 사이에 약 2.5배 가량으로 증가하였다〈表 5〉.

농수산물 전체로 볼 때에는 1981~84년 사이에 총수입액이 32억 2,400만 달러에서 21억 6,300만 달러로 약 32%가 감소하였음에 비하여, 농수산부문 關稅徵收額은 1,724억 7,200만 원에서 2,056억 2,300만 원으로 같은 기간에 약 20%가 증가하였다〈그림 5〉.

이 사실은, 이론상 적어도 첫째, 국내 농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 농수산물 수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왔다는 점과, 둘째,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關稅의 부과를 강화하여 왔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농수산부문 수입과 關稅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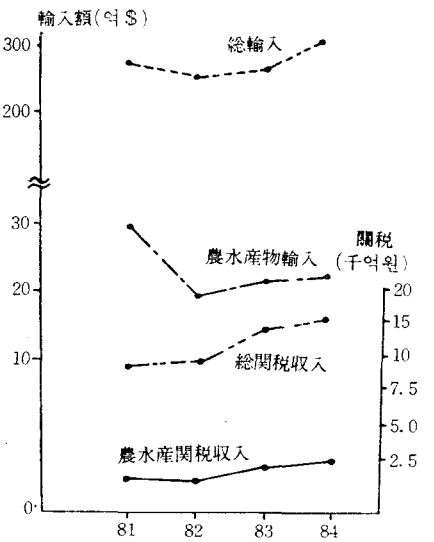

Ⅲ. 農水産物輸入에 대한 關稅와 非關稅障壁

1. 관세율 적용체계에 비추어 본 農水産物輸入 概況

농수산물의 輸入을, 관련식품 또는 食料品의 개념에 속하는 품목까지 포함하여, 현행 관세율 적용체계에 맞추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우선 商品分類面에서는 HS 商品分類 기준을 준용할 때 제1類의 산 동물을 비롯하여, 제2류의 육·설육, 제3류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제4류의 낙농품, …제7류의 식용채소, 제8류의 식용과실, …제10류의 穀物…, 제22류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4류의 연초 등에 이르는 24개 류로 大別되고 있다〈그림 6〉.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1984년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료품의 商品類別 輸入 實績은 금액 기준으로 총 21억 6,320만 달러로서 1980년의 22억 6,965만 달러, 1983년의 21억 9,000만 달러 등의 실적에 비여여 경미한 減少勢에 있다〈表 6〉.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중 금액 기준으로 수입 규모가 가장 크고 비중이 높은 것이 제10류의 곡물로서 1984년에는 10억 240만 달러를 수입하여 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46.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곡물 수입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飼料穀의 수입이 많았던 때문인바, 이것은 1981년의 60.3%를 고비로 여여 점차감소하고 있다. 다음은 菜油種子, 당류와 설탕, 동물성 유지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으나, 각각 12% 이내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농수산물 전체 輸入額이 총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10.2%에서 1982년에는 8.1%로, 그리고 1984년에는 7.0% 등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表 7〉.

2.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率과 關稅率 豫示制

1985년 하반기와 1986년 상반기 輸出入期別 公告에 따르면 한국의 全商品을 기준으로 기존의 自由化品目에 새로 233개 품목을 추가하여 모두 6,942개 品目의 수입을 開放, 87.7%의 수입자유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農水産物은 452개 품목을 開放하여 63.2%의 自由化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이 수입이 自由化될 상품의 대부분이 국내 산품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국내산업에 대하여 단기 또는 長期的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不利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보는 視角에 따라 肯定的인 見解만을 집약하면, 수입의 自由化는 한국경제가 先進國經濟圈으로 발돋움하는 不可避한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에 대처하면서 輸出伸長을 위한 互惠原則의 측면에서도 必要한 것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

한국은 1984년 1월 1일부터 輸入自由化豫示制를 도입하여 1988년까지 輸入自由化 對象品目을 결정 豫示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은 1988년까지 66.6%의 開放이 계획되고 있다〈表 8〉.

豫示制에 의한 농수산물 輸入에의 평균관세율은 예시제 도입 이전의 31.4%에서 1984년에는 29.6%로 인하되고, 그것이 점차 하락하여 1985/86년에는 28.8%에 이르고 있으며, 1988년까지

그림 6 農水産物 關稅體系上 商品 分類(HS 體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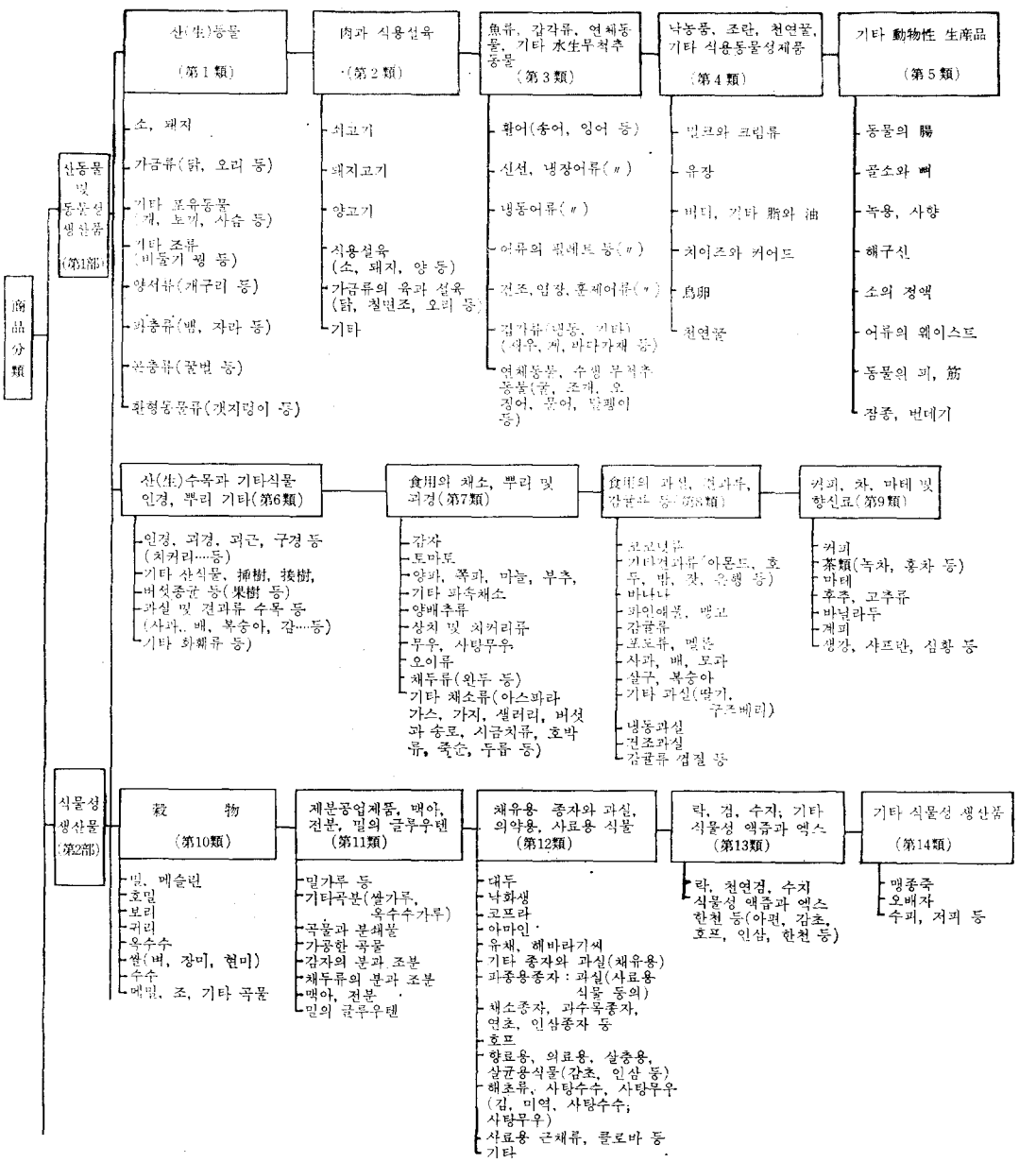

그림 6 農水産物 關稅體系上 商品 分類(HS 體制)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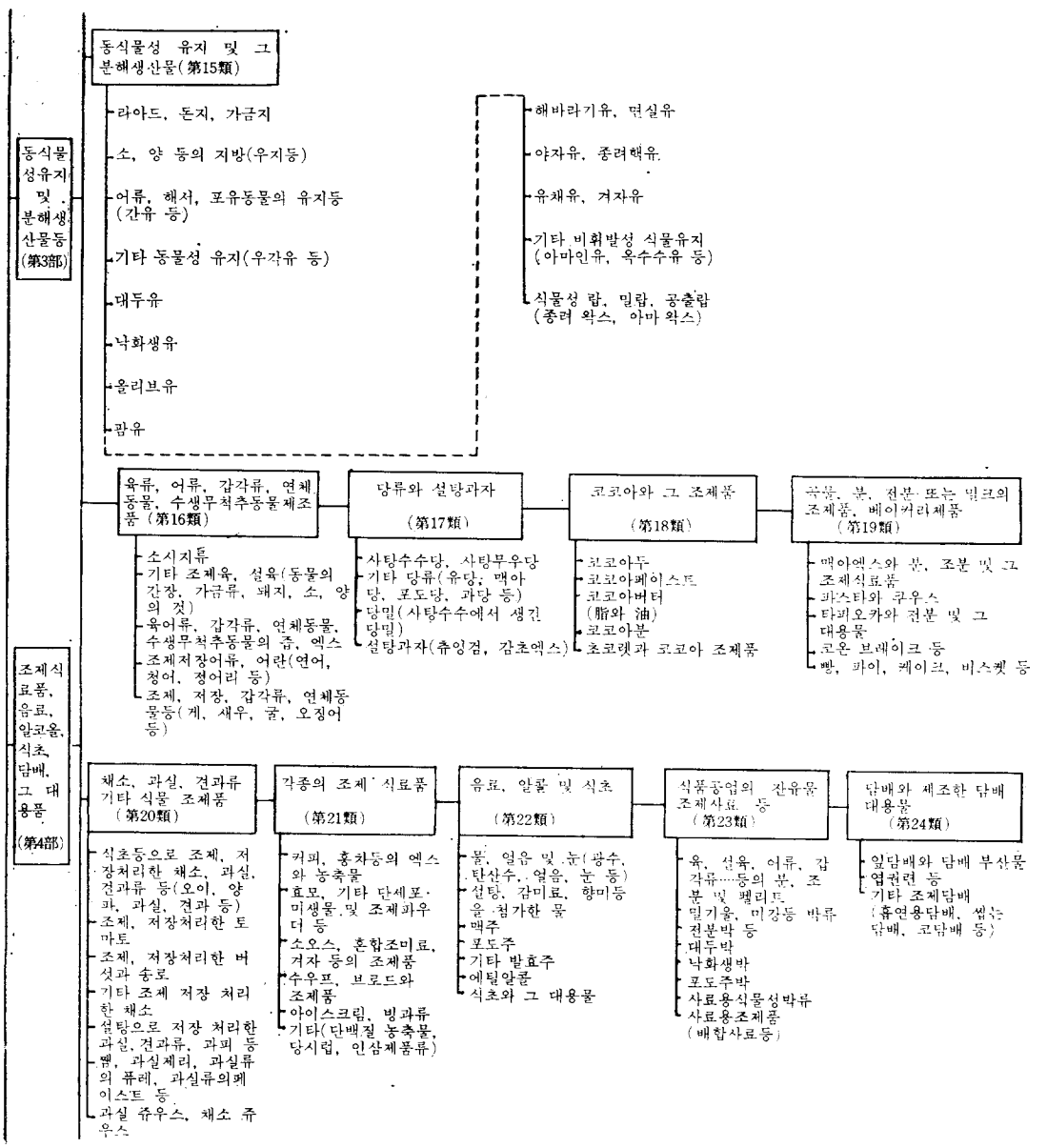

表6 農水産物 및 食料品 商品類別 輸入實績, 1980~84

단위 : 톤, 1,000달러,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4/1980
1 류 : 산(生) 동물	수량	2,166	4,096	13,215	18,346	11,157	515.1
	금액	9,937 (0.3)	16,220 (0.5)	46,414 (2.3)	66,701 (3.0)	39,976 (1.8)	402.3
2 류 : 육, 식용설육	수량	15,625	39,737	80,062	355,847	35,210	225.3
	금액	22,604 (1.0)	89,008 (2.8)	158,783 (8.0)	155,483 (7.1)	72,165 (3.3)	319.3
3 류 :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수량	45,450	46,904	77,880	65,375	80,496	177.1
	금액	33,959 (1.5)	55,631 (1.7)	54,522 (2.8)	48,945 (2.2)	59,905 (2.8)	176.4
4 류 : 낙농품	수량	6,465	6,603	12,421	14,566	17,932	277.4
	금액	8,187	7,921	13,403	13,475	14,859	181.5
5 류 : 동물성 생산품	수량	11,348	8,928	9,404	9,912	11,621	102.4
	금액	50,008	53,957	50,006	55,914	41,664	83.3
6 류 : 산수목과 기타 식물인경	수량	449	930	1,427	2,501	1,722	383.5
	금액	1,538	2,182	2,974	3,649	3,073	199.8
7 류 : 식용채소 뿌리, 괴경	수량	10,689	128,074	86,649	149,933	192,294	1,799.0
	금액	5,943	32,309	23,131	26,436	42,107	708.5
8 류 : 식용과실	수량	17,801	8,331	11,322	14,776	18,878	106.1
	금액	7,897	8,119	10,678	10,521	11,228	142.2
9 류 : 커피, 향신료	수량	14,186	14,862	23,003	19,861	27,212	191.8
	금액	37,311	30,616	36,688	29,807	41,975	112.5
10 류 : 곡물	수량	5,140	7,687	5,485	6,354	6,334	123.2
	금액	1,073,128 (47.3)	1,943,120 (60.3)	886,814 (44.9)	1,013,131 (46.3)	1,004,208 (46.4)	193.6
11 류 : 제분공업 생산품	수량	44,922	18,869	11,294,715	5,509	5,157	11.5
	금액	15,357	7,468	13,482	2,720	2,634	17.2
12 류 : 채유용종자	수량	586,996	553,670	629,292	691,978	754,966	128.6
	금액	207,557	221,110	189,550	212,549	264,640	127.5
13 류 : 식물성액즙 및 기타	수량	2,199	2,113	2,829	2,744	3,221	146.5
	금액	6,022	5,420	7,041	7,482	7,547	125.3
14 류 : 식물성편조물 및 조각과 세공품	수량	27,467	30,784	28,016	24,612	19,790	72.1
	금액	6,407	6,700	7,722	7,362	7,407	115.6
15 류 : 동물성 유지	수량	715,224	628,642	268,915	301,040	282,178	39.5
	금액	125,466	141,896	142,226	146,416	178,967	142.6
16 류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조제품	수량	156	198	236	488	1,319	745.5
	금액	684	645	808	1,608	3,198	367.5
17 류 : 당류와 설탕	수량	1,065,331	1,032,303	1,127,080	1,057,272	1,099,953	3.2
	금액	534,200	474,870	251,067	223,922	217,481	40.7
18 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수량	2,671	2,864	3,300	4,115	4,446	166.5
	금액	9,326	6,726	6,422	8,897	11,026	120.2
19 류 : 곡물, 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	수량	361	604	602	575	998	176.5
	금액	717	1,013	1,091	950	1,406	196.1
20 류 : 채소, 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조제품	수량	11,962	15,206	11,477	11,967	14,491	121.1
	금액	11,113	13,545	11,721	12,012	15,883	142.9
21 류 : 각종 조제 식료품	수량	3,356	3,538	2,865	3,849	13,606	405.4
	금액	8,284	8,472	7,857	8,874	9,028	109.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4/1980
22 류 : 음료, 알콜 및 식초	수량	9, 308	12, 806	13, 220	65, 334	43, 685	469. 3
	금액	10, 245	9, 962	7, 986	26, 944	23, 127	225. 7
23 류 : 조제사료	수량	13, 528	75, 935	154, 031	530, 668	364, 613	2, 695. 2
	금액	5, 659	22, 723	37, 427	88, 996	76, 617	1, 353. 9
24 류 : 연초	수량	14, 426	11, 213	1, 471	3, 961	15, 191	105. 3
	금액	78, 097	64, 104	8, 423	17, 230	13, 062	116. 7
농축수산물 합계	수량	7, 765, 000	10, 552, 000	19, 338, 000	9, 709, 000	9, 354, 000	120. 5
	금액	2, 269, 646	3, 223, 737	1, 976, 241	2, 190, 024	2, 163, 185	95. 3

( )안은 輸入總額에 대한 백분비임.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年報, 1981~85.

表7 全體産業 輸入額 중 農水産物 및 食品輸入額 比重

단위 : 100만 달러,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84/77
수 입	전 체 총 액 (A)	10, 811	14, 972	20, 338	22, 292	26, 136	24, 251	26, 192	30, 631	183. 3
	농 수 산 부 문 (B)	925	1, 224	1, 893	2, 270	3, 224	1, 976	2, 190	2, 163	133. 8
	비 율 (B/A)	8. 5	8. 2	9. 3	10. 2	4. 7	8. 1	8. 4	7. 0	—

資料 : 農水産部.

表8 農水産物 輸入自由化 推移

구 분	개편 제 1 차년도 이후 예시내용						1985下/86上 기별공고이후 자유화		
	1984	1985	1986	1987	1988		총품목수	자 유 화 총품목수	자유화율 (%)
					품 목	자유화율			
전 상 품	352 (84. 7)	233* (87. 7)	306 (91. 6)	174 (93. 8)	112	95. 2	7, 915	6, 942	87. 7
농 수 산 물	19 (61. 8)	11** (63. 2)	23 (66. 6)	—	—	66. 6	715	452	63. 2

( ) 內는 당해년도의 자유화율.
*당초 예시품목수는 237개 품목이었으나 4개 품목 변경.
**당초 예시품목수는 10개 품목이었으나 1개 품목 변경.

는 25.2%까지 내려가도록 豫示하고 있다. 이로써 全商品 平均關稅率 18.1%나 非農業商品 平均關稅率 16.9%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水準에 머물게 된다〈表 9〉.

表9 農水産物輸入 平均關稅率 推移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전 체	23. 7	21. 9	21. 3	19. 9	19. 3	18. 1
농 수 산 물	31. 4	29. 6	28. 8	27. 1	26. 4	25. 2
비 농 수 산 물	22. 6	20. 6	20. 3	18. 7	18. 2	16. 9

資料 : 財務部.

3. 農水産物 수입관세율의 운용

현행 한국의 관세율은 租稅法律主義에 의하여 關稅法의 일부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법률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다만 關稅法이 위임한 일정 범위내에서 行政府의 재량으로 彈力關稅率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률상, 그리고 行政上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 適用事例는 극히 不振한 실정이다. 현행 關稅法 제 7 조 1 항에서는 基本關稅率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表 10 主要關稅率의 內容과 農水産物輸入에의 適用 與否

稅率別	法的根據	目的 또는 必要性	適 用 要 件	稅率, 課稅範圍	農水産部門適用
1) 基本關稅率	관세법제7조1항	關稅率 기본골격 確立維持	産業, 財政, 貿易, 社會, 文化的 政策에 상응하는 稅率 策定	원칙상 전상품, 일부품목	주로 적용
2) 暫定稅率	관세법제7조 2,3항	基本關稅率의 일시적 수정이 必要할 때(新規産業保護등을 위하여)기본세율대행	基本關稅率 수정의 必要性	결정된 품목에 한정	적 용
3) 彈力關稅	—	—	—	—	—
가) 반덤핑關稅	관세법제10조	新規産業保護育成, 物價調節, 貿易統制 消費者保護등을 위하여	불공정저가격 輸入으로 國內産業發展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不當廉賣價額—正常到着價格	미적용
나) 報復關稅	관세법제11조	자국상품의 關稅被害 만큼 報復(자국상품이 받는 관세대우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국상품이 輸出에서 불리한 관세대우를 받는 경우(자국수출저해)	關稅價格 상당액이하의 금액	미적용
다) 緊急關稅	관세법제12조	국내산업에 대한 緊急保護를 위하여	동종 國內産業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한함	79年 계란류 및 80년 바나나에 적용
라) 調整關稅	관세법제12조의2	일정기간 수입억제	급격한 輸入自由化가 國內産業 저해 및 國民消費生活 혼란을 초래할 경우	해당품목에 한함	84년 신규 도입
마) 相計關稅	관세법제13조	補助金등에 의하여 생산하여 수출하는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받아 생산수출품이 국내산업을 해치는 경우	基本關稅率+補助金	미적용
바) 便益關稅	관세법제14조	특정국과의 政治, 經濟的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政治, 經濟, 外交的 차원에서 우대가 必要할 때	기존관계에 의한 편익 한도내	GATT회원 44국개국등
사) 物價平衡關稅	—	—	—	—	—
(1) 差額關稅	관세법제15조	특정물품의 수급조절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해당상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때	基準價格—課稅價格	미적용
(2) 滑尺關稅	관세제15조	國際價格 變動에 의한 國內價格 變動의 조정(生産者, 消費者保護)을 위하여	特定品目의 國際價格이 등귀하여 동종상품의 國內價格이 위협을 느낄 때	· 基本關稅率 以下의 關稅率 적용 · 基本關稅率에 의한 관세액이하 금액	79년 밀, 원면등에 적용
(3) 季節關稅	관세법제15조	季節的 價格變動이 심한 品目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해당품목의 價格이 季節變動에 따라 위협을 느낄 때	關稅價格의 40%상당율 범위내에서 基本關稅率의 상하조절	미적용
아) 割當關稅	관세법제16조	特定品目의 輸入制限 調整 및 國內 生産者와 消費者등시보호를 위하여	물자수급상 輸入이 必要하거나(부족할 때)수입 억제가 必要할 경우(남아돌때)	할당 이외의 수입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 40% 세율을 가감한 세율 적용	

資料 : 關聯法律(關稅法, 貿易管理法)에서 발췌요약

10조 내지 16조에서는 각종 탄력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農水産物의 수입에는 덤핑 防止關稅나 相計關稅 등 주요 稅率이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現行 關稅法상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農水産部門 關稅

率의 사례는 〈表 10〉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최근 미국, EC, 日本 등이 對外的으로는 貿易開放을 강조하면서 自國에 들어오는 商品에 대하여는 집요하게 保護主義를 고수하려는 현실 속에서 위의 각종 탄력관세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4. 農水産部門의 非關稅障壁

각국은 關稅 이외에 각국의 利益追求에 상응하는 무역의 管理를 試圖하고 있는바, 品目, 數量, 규격, 품질, 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방식에 의하여, 즉 다양하고 복잡한 非關稅障壁을 동원하여 수출입을 조정한다.

이에 비여여 韓國은 期別公告, 特別法, 輸入監視制, 稅制, 補助金 등 몇 가지 장치로써 수입을 규제코자 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규모면에서 EC,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현저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특히 지적될 수 있는 것은 美國, EC, 日本 등에서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공공연히 활용하고 있는 反덤핑關稅와 相計關稅를 賦課活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未備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짚고 넘어갈 農水産部門 非關稅障壁의 하나로서 輸入附加金制度를 定着化하는 問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性格上 GATT 등 國際貿易協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外形的인 公開를 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와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活用할 경우 최소한 그에 대한 對處方案으로서라도 이 制度는 實施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울러 이 制度를 강력히 추진 시행할 專擔機構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 美國의 이른바 通商代表部, 大統領직속하에 準立法權이나 準司法權 등을 부여하고 있는 FTC 또는 ITC 등과 유사한 機構의 운용이 필요하다.

5. 外國의 農水産物 輸入規制 裝置

GATT 농수산물 교역위원회에 따르면, 北美와 EC 회원국 및 일본 등 多數 經濟先進國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 농수산물 輸入規制措置는 각종 關稅 이외에 非關稅障壁으로서도 예컨대 輸入附加金, 수입허가제, 수입제한(쿼터, 최저가격제, 계절제한 등), 動植物檢疫, 포장, 상표, 商品標準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절차를 요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美國은 농수산물에 대여여 無稅 내지 30% 수준의 關稅를 부과하는 이외에 品目에 따라서는 部分的 關稅와 一般特惠關稅 등을 적용하며, 非關稅障壁으로는 사탕무우와 사탕수수 등에는 輸入附加金을 賦課하고, 소, 밀크, 크림 등에는 檢疫制度를, 또 땅콩에는 쿼터제, 가격지지 및 生産調整 등의 방법을 통한 輸入規制를 하고 있다〈表 11〉. EC諸國도 定規的인 關稅 이외에 品目에 따라 輸入附加金(밀크와 크림, 신선채소, 밀과 메슬린, 쌀 등)을 부과하기도 하고, 기타, 계절제한, 통화규제, 諸證明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日本은 포괄계약(밀크와 크림류), 동식물 검역(소·채소·사과·밀·옥수수·쌀 등), 국영무역, 가격지지, 생산통제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동원하고 있다. 南美의 페루는 소·밀크류·채소류·밀·쌀·어류 등의 輸入에 輸入附加金制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輸入承認制, 動植物檢疫, 商品標準制 등의 비관세장벽을 채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외국의 對外農水産物 輸入規制, 특히 비관세장벽의 다양한 실시 사례는 韓國도 關

表 11 美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槪要(農水産部門)

	관 세	부가금·부담금	원가계및 수입제한	동 식 물 검 역	상품표준(포장·상표)	국영무역 기 업	기 타	GATT의 해당조항
소	0~1.7% 부분 관세·기타 특혜	—	—	검 역	—	—	—	2조(c, f) 20조b(a)등
밀크와 크림류	1.2~24.4% 관세부과	—	쌍무 쿼터	검 역	—	—	가격지지	2조(c, f) 등
신선 채소	0~30.4% 부분적 관세·일반특혜관세·기타 관세	—	—	—	—	—	—	2조(f)등
사 과	0~2.2% 관세 부과·일반특혜 관세·기타 특혜관세	—	—	—	—	—	—	2조(f)등
밀	6.8% 관세부과	—	—	—	—	—	—	2조(f)등
옥 수 수	0~25% 관세부과 일반특혜 관세·기타 특혜관세	—	—	—	—	—	—	2조(f)
쌀	0~4.9% 부분적 관세	—	—	—	—	—	—	2조(c, f)등
땅 콩	—	—	총괄 쿼터	—	—	—	가격지지 생산조정	25조5(b)등

자료 : GATT 농산물교역위원회.

稅 이외에 그러한 非關稅障壁의 적극적인 活用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Ⅳ. 農水産物 關稅制度의 問題와 改善方向

1. 問題의 視角

농수산물 관세제도는 制度 자체의 복잡성 못지않게 그것을 둘러싼 관련 與件도 복잡다기하다. 本稿는 그 關稅制度에서 야기되는 問題의 視角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비추어 導出되는 몇 가지 문제점만을 集約해 본 다음,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행 關稅制度 특히 농수산물 관세제도는 國際貿易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즉 制度의 環境適應的 측면을 보고,

둘째로, 농수산물 관세제도의 國家産業政策과 農水産政策方向에의 合目的性 問題를,

세째로, 關稅率 자체의 合理的 現實的 측면, 예컨대 法律과 現實과의 乖離는 없는가, 制度 자체의 役割의 限界性은 없는가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를 찾아본다.

2. 問題點

가. 國際環境 변화에 따르는 問題

[1] 通商外交的 영향에의 의존성 증대

資源民族主義를 배경으로 한 국가간 무역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농수산부문 關稅制度는 각국의 經濟構造外的인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主要經濟國을 비롯한 大多數 국가들이 關稅가 아닌 非關稅障壁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工産品輸出(한국 제품의 自國輸入)의 前提條件으로 農産物輸入(對韓輸出)을 開放하고, 關稅率을 낮추라는 등의 要求가 심화되고 있다.

[2] 關稅 에스칼레이션에 의한 外國農水産物 原材料 輸入增大

도꾜 라운드(Tokyo Round) 등 數次의 관세인하협상 결과로 先進國의 평균관세율은 10%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關稅 에스칼레이션(tariff escalation)이 修正되지 않으면, 外國産 農水産原材料의 輸入이 계속되어 國內自給率 提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産業 및 農水産政策과 관련한 關稅率 問題

[1] 농수산부분 관세율의 價格調節機能 미흡

한국의 현재 全品目 平均關稅率은 19.9%이고, 농수산물 평균관세율은 27.1%인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현과 더불어 1988년에는 농수산물의 경우 25.2%까지 평균관세율을 낮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輸入은 물량과 금액면에서, 보다 엄격히 制限되고 있기 때문에 關稅에 의한 價格調節機能은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농수산물의 價格變動幅이 비교적 커서 현행의 경직적인 관세율만으로는 상황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농수산물 관세율의 伸縮性 결여

전술한 바와 같이 농수산부문에 있어서도 관세율의 彈力的運用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률상 存置되어 있는 규정조차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彈力關稅率類가 있어[8] 伸縮的인 稅率適用이 어렵게 된다.

[3] 농수산물 保護關稅 설정상의 限界性

그림 7 關稅賦課 上限價格을 上廻하는 國內生産 供給價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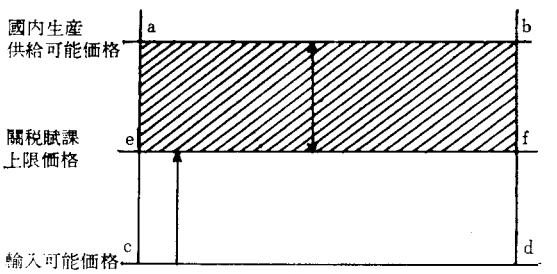

기본관세의 硬直性을 보완하기 위하여 彈力關稅率의 적용이 요구됨은 물론이나 農水産物 중에는 이러한 基本關稅와 彈力關稅率을 최대한으로 적용하고도 外國製品의 輸入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事例가 있다.

즉, 國內農水産物의 가격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對內外的 價格隔差에 상당하는 關稅의 賦課가 곤란하게 되어, 결국 관세만으로는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牛骨의 경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생산 공급가격(ab)이 외국으로부터의 輸入可能價格(cd)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가격(ef)으로도 국내생산 공급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되어 결국 關稅에 의한 輸入規制는 불가능하게 된다.

[4] 농수산 保護關稅의 適用品目 선정과 稅率 決定基準의 未洽

농수산물의 輸入開放化 過程에서 保護品目을 선정하고, 거기에 적용할 關稅率을 결정하는 데에는 수입수요, 국내물가, 생산자소득, 수입선의 입장 등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적절히 考慮

[8] 彈力關稅 중 농수산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割當關稅뿐이고, 적용품목도 1985年 下半期 기준으로 總 19個品目 중 농수산부문은 타피오카, 냉오징어 등 3~4개 품목에 불과하다.

表 12 主要彈力關稅率의 內容과 農水産物輸入에의 適用與否

稅率別	法的根據	目的 또는 必要性	適用要件	稅率, 課稅範圍	農水産部門適用
가) 반덤핑 關稅	관세법 제10조	新規産業 保護育成, 物價調節, 貿易統制 消費者保護등을 위하여	불공정저가격 輸入으로 國內農業發展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不當廉賣價額—正常到着價格	미적용
나) 報復 關稅	관세법 제11조	자국상품의 關稅被害 만큼 報復(자국상품이 받는 관세대우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국상품이 輸出에서 불리한 관세대우를 받는 경우(자국수출저해)	關稅價格 상당액이하의 금액	미적용
다) 緊急 關稅	관세법 제12조	국내산업에 대한 緊急保護를 위하여	동종 國內産業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한함	79年 계란류 및 80년 바나나에 적용
라) 調整 關稅	관세법 제12조의 2	일정기간 수입억제	급격한 輸入自由化가 國內産業 저해 및 國民消費 生活혼란을 초래할 경우	해당품목에 한함	84년 신규도입
마) 相計 關稅	관세법 제13조	補助金등에 의하여 생산하여 수출하는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받아 생산수출품이 국내산업을 해치는 경우	基本關稅率+補助金	미적용
바) 便益 關稅	관세법 제14조	특정국과의 政治, 經濟的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政治, 經濟, 外交的 차원에서 우대가 必要할 때	기존관계에 의한 편익한도내	GATT 회원국 등
사) 物價平衡關稅	—	—	—	—	—
(1) 差額 關稅	관세법 제15조	특정물품의 수급조절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해당상품의 수급조절상 증대한 차질이 발생할 때	基準價格—課稅價格	미적용
(2) 滑尺 關稅	관세법 제15조	國際價格 變動에 의한 國內價格 變動의 조정(生産者, 消費者保護)을 위하여	特定品目의 國際價格이 등급하여 동종상품의 國內價格이 위협을 느낄 때	· 基本關稅率 以下의 關稅率 적용 · 基本關稅率에 의한 관세액이하 금액	79년 밀, 원면등에 적적용
(3) 季節 關稅	관세법 제15조	季節的 價格變動이 심한 品目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해당품목의 價格이 季節變動에 따라 위협을 느낄 때	關稅價格의 40% 상당율 범위내에서 基本關稅率의 상하조절	미적용
아) 割當 關稅	관세법 제16조	特定品目의 輸入制限 調整 및 國內 生産者와 消費者 동시보호를 위하여	물자수급상 輸入이 必要하거나 (부족할 때) 수입억제가 必要할 경우 (남아돌 때 등)	할당내외의 수입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40% 세율을 가감한 세율 적용	타피오카, 냉오징어 등 3~4개 품목(1985)

*資料 : 關聯法律(關稅法, 貿易管理法)에서 발췌 요약.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基準 등이 未確立된 상태이다.

다. 關稅行政 및 法律體系上의 問題

[1] 關稅行政 業務分掌의 도호성

농수산부문 관세제도를 다루고 있는 行政機關에 분장된 업무의 범위와 성격이 불분명하고 각 관련기관간의 상호연결성이 미흡하다. 예컨대, 재무부의 현행 각 局課別 분장업무를 보면, 關稅局의 국제관세과에서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9] 산업관세 과에서는 "탄력관세제도의 기

[9] 재무부직제 제14조 ⑥의 2.

획 입안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0] 그런데 그들 업무간의 범위와 한계가 애매모호하다.

[2] 농수산관세 관련 法律의 非現實性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관련법률에 明示되어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關稅法 제10조에는 덤핑防止關稅에 관하여, 그리고 同法 第13條에는 相計關稅에 관한 규정이 存置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농수산부문에는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表 12〉.

[3] 關稅效果 測定 기술체계 및 關稅專門人力의 未洽

농수산물 수입관세를 비롯한 모든 關稅效果를 측정하는 技術的 장치가 아직 確立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關稅業務에 대처할 전문적인 行政人力도 不足한 실정이다.

[4] 非關稅障壁의 活用度 低調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무역국들은 GATT 등 국제무역 규범상 위배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手段으로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韓國은 그것이 너무 단조롭고 小幅的이다. 특히 현행의 관세가 價格調節機能에 미흡하고 동시에 국내농업의 保護機能도 약하다는 사실 등은 어떠한 形態로서이든 비관세장벽의 活用度가 제고되어야 함에도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3. 改善方向

가. 關稅制度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通商外交의 增進

통상외교를 통한 關稅外的 隘路를 미리 打開함으로써 關稅制度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다. 關稅率調整에 우선하는 前哨的 手段으로서 부단한 貿易外交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 農水産 基礎原材料 輸入低關稅原則의 수정

지금까지 거의 일반화되어 온 외국으로부터의 輸入原材料 優待關稅原則을 단계적으로 修正하여, 關稅 에스칼레이션에 따르는, 예컨대 國內食料品 自給率向上을 저해하는 등 否定的인 측면을 解消하여야 한다.

나. 농수산관세의 伸縮的 運用의 擴大

농수산물 關稅率이 직접적인 輸入規制 등 관세 이외의 조치 등에 의하여 가격조절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대한 1次的 대응책으로서 각종 彈力關稅率을 적극 活用한다. 그 先行要件으로서 아직 미비된 關聯 細部規測을 완비하고, 보다 강력한 專擔機構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輸入開放品目의 결정 및 關稅率 設定基準의 科學化

계속되는 對外貿易開放過程에서 保護를 요하는 농수산품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적용할 關稅率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 물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科學的인 기준을 설정하는 기술을 開發, 定着化하여야 한다.

라. 輸入附加金制度의 實施

현행 關稅率制度에 의한 농수산물 보호기능의 限界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EC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非關稅障壁의 一環으로서 농수산물 수입부가금제도를 신중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기타 非關稅障壁의 적극적 활용

美國, EC, 日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10 재무직제 제14조 4항 2.

장벽을 GATT 原則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리고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조치를 초래하지 않을 범위내에서, 집요하게 실시토록 노력한다.

사. 關稅行政業務 分掌의 再調整

현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각 부, 廳, 局, 課 등의 업무를 輸入開放化와 關稅率 運用效率化 方向으로 再調整한다.

아. 關聯法規 補完 및 現實化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彈力關稅制가 관계법률에 의거 규정되어 있으나, 그 細部規則 등의 미비로 인하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事例에 對備하여야 할 것이다.

자. 關稅情報體系의 開發 및 關稅士制度의 積極的 活用

국제적으로는 關稅情報體系를 開放하고, 국내적으로는 현행 關稅士制度를 積極 活用하여 關稅行政의 效率을 높이는 努力도 아울러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關稅廳, 「關稅行政」, 1984.

農經研, 「農水産物關稅政策의 調整方向」, 1982.

_____, 「農水産物關稅制度의 效率的 運用에 관한 硏究」, 1985.

農協中央會, 「主要國의 農産物輸入과 農業保護戰略」, 1985.

大韓貿易振興公社, 「'85 日本의 特惠關稅制度解說」, 1985.

法制處, 「大韓民國 現行法令集」.

日本關稅協會, 「東京ラウンドの全貌」, 1980.

張炳徹, 「最新關稅法」, 貿易經營社, 1985.

財務部, 「大韓民國關稅率表」, 1985

韓國經濟硏究院, 「段階的 貿易自由化에 대응한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1983.

韓國貿易協會, 「輸出入期別公告」, 1984/85.

GATT,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ECD, *Problems of Agricultural Trade.* Paris, 1982.

USITC, *1983 Annual Reports of USITC*, 1984.

USFTC, *Federal Trade Commission Law Enforcement, 1980's.*